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10년 8월 13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2010. 7. 1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,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발의 절차를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제안과 관련하여 교육·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.
(안 제5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제66조, 제71조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·학예사무를 소관하는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.”를 “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3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·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제53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</p>

관계법규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“교육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